

# 水道法 施行規則

제정 1969. 8. 4 건설부령 제 95 호  
개정 1981. 2. 25 건설부령 제291호  
개정 1992.12. 15 건설부령 제519호  
개정 1995. 7. 1 환경부령 제 13 호

- |                             |                             |
|-----------------------------|-----------------------------|
| 第 1 條 目 的                   | 第 8 條 竣工檢査 申請               |
| 第 2 條 中水道의 施設基準             | 第 9 條 水道管理者의 資格             |
| 第 3 條 中水道의 水質基準             | 第 10條 供給規定의 承認申請            |
| 第 4 條 中水道設置者에 對한 支援         | 第 11條 專用上水道 認可申請書(95.7.1개정) |
| 第 5 條 一般水道事業 認可申請(95.7.1개정) | 第 12條 技術診斷等(95.7.1 신설)      |
| 第 6 條 施設基準                  | 第 13條 過怠料의 徵收節次             |
| 第 7 條 水道工事監督者의 資格           | 附 則                         |

## 水道法 施行規則

개정 1995. 7. 1 환경부령 제 13 호

- 第 1 條(目的) 이 영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第 2 條(中水道의 施設基準) ①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여과지·소독설비 등의 재처리시설
  2. 필요한 양의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등의 송수시설
  3.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등의 배수시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 3 條(中水道의 水質基準) 중수도를 설

치·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第4條(中水道設置者에 대한 支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중수도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第5條(一般水道事業 認可申請)**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및 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평면도(95.7.1개정)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중단도 및 동수경사도(95.7.1개정)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의 사본)(95.7.1개정)

**第6條(施設基準)**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은 계획된 취수량을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고, 취수원의 유심변화나 하상상승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저수시설은 취수에 지장이 없는 규모로 설치하고 독을 쌓는 곳과 저수지

밑의 지반이 견고할 것

3. 하천·호소 또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수시설에 여과지를 설치할 것
4. 송수시설은 원칙적으로 관수로로 하여야 하되,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질이 견고하고 오염의 우려가 없는 용수로로 대체하여 설치할 것
5. 급수구역 지반의 높낮이가 심한 경우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구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되, 배수시설에는 배수지·감압밸브 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적정한 수압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第7條(水道工事監督者の 資格)** 영 제1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학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第8條(竣工檢査申請)**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고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9條(水道管理者의 資格)**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학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 당해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第10條(供給規定 承認申請)**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

설교통부장관,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5.7.1개정)

1. 수도요금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장치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第11條(專用上水道 認可申請書)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급수인구조서로 한다.

第12條(技術診斷등) ①영 제33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95.7.1신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환경관리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도협회
5.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협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안전진단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②수도사업자가 영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95.7.1신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第13條(過怠料의 徵收節次)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

수도법의 개정(1994.8.3 법률 제4781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 가.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시의 구비서류 중 각 구조물도에 관한 서류를 삭제함(제5조제2항제1호).
- 나.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함(제12조제1항).

<환경부 제공>